

수원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8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87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148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이승열

피고, 피항소인1. B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성덕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변론 종결2020. 11. 12.

판결 선고2020. 12.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148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B중중은 원고에게 1,038,446,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48,97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재권

판사이상호

판사조효정